

시대전환

2021 시대전환
위원장을 위한

KIT



불타는 열정



함께하는 마음



주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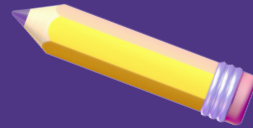
시대전환 10대 정책



두려움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신에 의해 시작됩니다



공평한 판단



배려 담긴 의견

시대전환
위원장편

두려움 없는 시대를 여는 가이드북

훑어보기 Contents

1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이란?	2-3p
	<당헌>에 규정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기	
	권리와 의무	
2	상설 및 특별위원장이란?	4-6p
	<당헌>에 규정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	
	권리와 의무	
3	조직도	7p
4	직책 대비	8P

<당헌>에 규정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시대전환의 핵심 지역조직으로 각 시·도를 총괄하는 “시도당”과 그 아래 기초 지역조직으로 “지역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당헌> 제37조(광역시·도당)

-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 ② 광역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시·도당상임대표당원회의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 ④ 광역시·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⑤ 광역시·도당의 승인취소와 해산은 중앙대표당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헌> 제42조(지역위원회)

- ① 광역시·도당 내에 기초 지역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과 당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지역위원회에는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당 대표는 소속한 시일 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한다.



여기서 잠깐!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임기는?

시도당을 대표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역위원장의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같이 합니다.

참고: <당헌> 제40조(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임명시 “**중앙대표당원(당연직)**”이 됩니다.

중앙대표당원이란?

시대전환의 핵심 대의기구 구성원입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아래 당헌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당헌> 제17조(권한)

중앙대표당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전국대표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전국대표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9. 임시전국대표당원대회 소집 요구
10.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의무는 무엇인가요?

참석하는 회의체

중앙당의 중앙대표당원회의 월 1회

임명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기회의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상임대표당원회의(최고 집행기관), 시도당대표
당원대회(최고 의결기관)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상임대표당원회의,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참고: <당헌> 제38,39,43,44조

기본 의무

중대 범죄와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1심
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 지역위원장 직 상실

직책에 맞는 당비 납부

참고: <지역위원회 설치 및 지역위원장 선출 당규> 제4조

<당헌>에 규정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시대전환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모두 입법과 정책에 대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정당 실현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헌> 제24조(플랫폼정당 구현을 위한 상설 및 특별위원회)

-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회원, 당원 및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정당 구현을 위하여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설 및 특별위원회에는 정책회원 및 모든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당원 및 정책회원, 일반국민이 직접 입법 또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상설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정책회원과 모든 당원이 플랫폼 온라인 공론장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으며 상임대표당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운영한다. 다음 사항에 관한 상설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1	플랫폼정당과 민주주의
2	양극화 해소와 경제혁신
3	남북관계와 세계질서
4	사회복지
5	기후·환경·에너지
6	여성
7	청년
8	정부혁신
9	지방분권
10	교육
11	문화
12	과학기술



여기서 잠깐!

상설위원회 vs 특별위원회

위 당헌에 규정된 의제와 관련 필수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이 “상설위원회”인 반면, “특별위원회”는 특정 목적에 따라 1년간 설치돼 운영됩니다.

그럼 상설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도 다른가요?

상설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당대표와 그 임기를 같이 하며, 특별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설치기간(1년)과 같습니다. 단, 필요시 특별위원회 설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 <당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특별위원회 유지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당원회의에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임대표당원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포함한 세부 사항(기간, 규모 등)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단, 종료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임대표당원회의는 협의를 통해 직권으로 특별위원회의 유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상설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임명시 “중앙대표당원(당연직)”이 됩니다.

중앙대표당원이란?

시대전환의 핵심 대의기구 구성원입니다. 구체적인 권리는 아래 당헌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당헌> 제17조(권한)

중앙대표당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3. 당헌 개정안의 발의
4.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5. 당규의 제정과 개폐
6. 전국대표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예산결산위원회의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전국대표당원대회에 제정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9. 임시전국대표당원대회 소집 요구
10.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동시에 “정책기획조정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

정책기획조정회의?

당의 정책과 관련해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는 회의체입니다. 특히, 시대전환의 정책경연의 장에서 최종 투표단계 직전 정책제안서의 심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경연의 장은 분기별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정책제안을 받고, 공론장 투표에서 최종 우승한 정책을 원내 의원실에서 국회 발의를 진행하는 시대전환 참여형 입법 프로세스입니다.

참고: <당헌> 제23조(정책위원회)

- ④ 정책위원장은 당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협의, 정책 기획과 조정을 위하여 정책기획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⑤ 정책기획조정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⑥ 정책기획조정회의에는 정책위원장과 정책의제 관련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플랫폼과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소장, 사무총장과 각 부총장, 수석대변인이 참석하고, 각 실·국장이 배석한다. 정책위원장은 필요한 기구의 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의무는 무엇일까요?

참석하는 회의체	중앙대표당원회의 월1회
	정책기획조정회의 월1회
	임명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정기 회의
반기 보고서 제출	제출처: 상임대표당원회의
	내용: 1)위원 구성, 2)회의 횟수, 3)정책위원회 및 플랫폼 온라인 공론장 등을 통한 정책 제안 등 기타 활동
	참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②, 제3조④
기본 의무	당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기
	당의 강령·정강정책, 당헌·당규 준수
	직책에 맞는 당비 납부
	참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③, 제3조⑤



여기서 잠깐!

플랫폼 온라인 공론장은 어디?



QR코드

현재 시대전환의 온라인 공론장은 빠띠 카누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채널이 개설되어 있으니, 활동에 적극적인 활용 기대합니다. 정책경연의 장의 전반적인 과정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구분	직책	금액(원외)
중앙당	당대표	100(50)
	원내대표	100
	고문단	특별당비
	전당대회위원장, 재정위원장	특별당비
	상임대표당원	50(20)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50(10)
	상설 및 특별위원장, 대변인단	30(5)
	중앙대표당원	50(3)
	대표당원	1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30(5) 20(5)
시도당	시도당 상임대표당원	1
	각급 위원회 위원장급	1
	각급 위원회 위원급	1
당 소속 공직자	국회의원	100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75
	광역의원	30
	기초의원	20
	기타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특별당비

납부 유의사항

- 매월 납부 원칙
- 청년당원 (만18세-34세) 당비에 50% 할인 적용
- 이중 직책 시 상위 직책의 당비로 납부
※예시: 중앙대표당원과 상설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34세 김시대 매월 납부 금액 2만 5천 원
3. 기존 당원은 해당 직책에 명시된 금액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납부 (단, 신규 당원은 임명된 달부터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괄호의 숫자는 원외 당원의 직책당비를 명시
※예시: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만54세 상임대표당원 김시대 매월 납부 금액 50만 원 (현재 선출직 정치인이 아닌 경우 매월 20만 원 납부)

납부방법

- 입금 계좌번호: 중앙당 회계 100-034-138022 (신한), 시대전환
※주의: 직책당비는 중앙당 후원회 계정으로 입금 불가
- 시대전환 홈페이지 접속 당원 후원 정기당비 신청
※주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CMS 가입 후 납부 시 반드시 정기당비 항목에 체크
- 일괄납부 가능
※예시: 2021년 4월 상설위원장을 임명받은 만50세 김시대 2021년 8개월분의 직책당비 40만 원 일괄납부

**두려움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대전환 